

# 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타이어 구입 및 교체 규격서

2026. 1.



**여수시도시관리공단**

YEOSU URBAN MANAGEMENT CORPORATION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타이어 구입 및 교체 규격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2026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타이어 구입 및 교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하 계약조건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간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 제1조 (계약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소유한 차량에 대하여 타이어 구입 및 교체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타이어 수량은 계약기간 동안 "공단"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공단"의 타이어 구입교체 시 원활하고 신속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타이어 교체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2조 (자격조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
2. 대형차량 타이어 교체, 정비 등에 필요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3.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하여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며, 청소차량 진출입 및 교통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업체로 05:00~18:00까지 수리 및 출장수리가 가능한 업체

### ※ 참가자격 제한 사유

공단의 차량은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실제 노선 운행시간 (05:00~15:00)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체결일 ~ 계약연도 12월 31일까지
2. 부득이한 경우 차기년도 단가계약 시까지 본 단가를 적용하여 구입 및 교체 할 수 있다.

### 제4조 (계약단가 등)

1. 계약단가는 모든 제반비용(공임, 휠 밸런스 등의 교정, 부품비, 운반비, 페타이어 원단처리 등)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작업 중 휠 등이 파손된 경우 휠 등의 구입 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 제5조 (교체조건)

1.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품목별 구입교체 요구사항에 따라 당일 이내에 요구 품목 및 수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납품을 요구하거나, 서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교체 요구에 의해 교체해야하는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으로 청소차량 타이어 교체가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공단"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단" 차량의 타이어 교체·탈부착 시, 휠 밸런스·얼라이먼트 교정을 하게될 경우, 제반작업은 계약단가에 이미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전륜 타이어 교체시 반드시 얼라이먼트 교정을 제공해야한다.
4. 한국산업규격 KSM6750(차량용 타이어) 및 KSM6751(산업차량용 및 건설차량용 타이어)에 적합해야 하며, 순정품 이어야 한다.
5. 모든 타이어는 종별 규격에 맞고 모양 및 두께가 균일하고 흠, 균열, 기포,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6. 제품의 성능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신제품으로 교체납품을 요구 할 수 있다.
7. 페타이어는 무상 수거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구 시 인계한다.

제6조 (공급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납품, 성능 등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고,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제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 (대금지급) "공단"의 차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의 타이어 교체 대금의 청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실제 차량별 교체내역 및 사진을 첨부하여 익월 10일 이내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 교체사진(교체 전, 교체 작업중, 교체 후 사진)은 차량별 정비내역서에 붙임 하여 제출한다.
2. "공단"은 제1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대금을 정산 확인한 후, 대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단"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대금지급 기한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실제 결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월별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시점에 재정산한다.

제8조 (계약해지 및 배상책임) "공단"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공단"에 허위 요청하여 납품 및 수리를 실시하였을 때
2. 휴업, 폐업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납품할 수 없을 때
3. "공단"의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4. 규격서 제5조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때
5. "공단"의 직원과 "계약상대자"간의 부정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 제9조 (계약의 해석 등)

1.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2. 본 계약의 조문 해석상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를 의한다.

### 제10조 (기타사항)

1. 상기 조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단가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교환 또는 정비가 발생 시 "공단"의 차량담당자에게 보고 후 협의에 의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보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공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붙임****타이어 규격서[소요예상량]**

규격	수량 (개)	용도 (수량)	차종 (적재무게)
245/70 R19.5 KRA60	253	생.폐(20)	메가트럭(5톤)
		생.폐(13)	파 비 스(5톤)
		음식물(13)	메가트럭(5톤)
		음식물(4)	파 비 스(5톤)
		재활용(2)	파비스메가(5톤)
		집게차(2)	메가트럭(2톤)
205/75 R17.5 KRA50	50	생.폐(1)	마 이 티(3톤)
		재활용(14)	마 이 티(3톤)
12 R22.5 KRA60	2	노 면(2)	엑시언트(2톤)
195/70 R15C KC53(앞)	10	골목용(7)	포 터(1톤)
145 R13C KC53(뒤)	15	정비용(1)	포 터(1톤)
		민원용(1)	포 터(1톤)
계	330	80대	

※ 상기 타이어 수량은 추정치로,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실제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 월별로 대금을 정산하며, 소요 수량은 증·감 될 수 있음

※ 타이어 교체·탈부착 시, 휠 밸런스·얼라이먼트 교정을 하여야 하며, 제반작업은 계약 단가에 이미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추가비용은 없음